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82
----------	-------

발의연월일 : 2026. 10. 13.

발 의 자 : 최혁진 · 박지원 · 이수진
염태영 · 김우영 · 민형배
김영배 · 정혜경 · 윤종오
김준형 · 한창민 · 전종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에는 학교운동부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체육적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기 어려우며, 체육고등학교 역시 입시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장애학생의 입학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수학교에 운동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체육 특목고 등에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제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3조의3 신설 등).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유아 및 장애학생”을 “유아”로 한다.

5의2.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이하 “장애학생”이라 한다)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장은 재학생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교운동부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여건상 운영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교운동부는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체육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중 체육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에 따라 장애학생을 선발한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제6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선발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을 “체육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를 “유아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 및 학교의 장은”을 “장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학생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u>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u> 7. ~ 10. (생략) ②·③ (생략) <u><신설></u>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u> <u>화</u> 6. <u>유아</u> ----- 7.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3(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이하 “장애학생”이라 한다)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장애학생 체</u>

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허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
원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
추고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
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
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
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장은
재학생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장애학생의 체육활
동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교
운동부를 구성·운영하여야 한
다. 다만, 학교의 여건상 운영
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교운동부는 인근 학교에 재
학 중인 장애학생을 포함하여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체육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중 체육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에 따라 장애학생을 선발한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제6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선발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유아 체육활동 지원) ①

--유아에-----

<u>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u> <u>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u> <u>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u>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 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
② 유치원의 <u>장</u> 및 학교의 <u>장</u> <u>은</u>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 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및 「고등교 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 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 <u>장은</u> ----- ----- ----- ----- ----- -----.